

최근 개정된 중국회사법의 검토*

이 정 표**

I. 중국 회사법의 개정방향과 적용범위	3. 유한회사 지분양도 신설
1. 중국 회사법의 개정배경과 방향	IV. 회사 자본제도의 개혁
2. 중국 회사법의 적용범위 명시	1. 재무·회계편제의무와 회계사무소 심계제도 신설
II. 회사설립요건의 완화와 구성원 책임강화	2. 준비금제도의 개혁
1. 회사설립요건의 완화	3. 이윤분배의 조정
2. 회사기관과 구성원의 법률책임강화	V. 회사의 조직변경과 외국회사 영업소
3. 회사설립과 관련된 특별규정	1. 회사 합병·분할·증자 및 감자
4. 상장회사의 특별규정	2. 회사해산과 청산
III. 주식(지분)과 회사채권의 유통성 강화	3. 외국회사의 영업소
1. 주식의 발행과 양도	VI. 결론
2. 회사채권의 발행과 양도	

I. 중국 회사법의 개정방향과 적용범위

1. 중국 회사법의 개정배경과 방향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약칭 회사법」은 199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1999년¹⁾ 및 2004년²⁾ 두 차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개정 전의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4년과제)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중국회사법은 종래 절대다수였던 국유기업을 일반 회사로 개혁하여 편입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법률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구 회사법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DI가 평균 500억달러를 초과하고, 기업인수합병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글로벌화 된 국제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범이 되었다.

종래 법학자들이 지적하였던 구 회사법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회사설립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둘째 회사 설립 및 운영에서 법정자본제의 문제점이 많았으며, 셋째 정관에서 정한 경영범위 내에서의 활동의무는 회사의 법인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넷째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완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가 불명확함에서 오는 난점이 있었으며, 다섯째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에 미흡하였으며, 여섯째 주식발행과 양도 및 상장 등에 관한 규정이 회사의 투자·유자에 적합하지 못하였고, 일곱째 상장회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회사의 발기인과 주요 경영진의 신의성실의무와 그 법률책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안전이나 신용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었다.³⁾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회사법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개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일으켰던 것은 WTO가입으로 인한 글로벌화 된 중국의 새로운 경제체제에 부합하면서도 이러한 경제체제를 국내적으로 규율하면서 촉진할 수 있는 규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가지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법률의 개정단계를 거쳤다. 개정 중국 회사법은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2005년 2월 27일, 회사법초안 제1차 심의)와 동 위원회 제17차회의(2005년 8월 23일, 동 초안 제2차 심의) 및 제18차 회의(2005년 10월 27일, 동 초안 제3차 심의)후 통과되었다. 현행 중국 회사법의 주요 개정작업은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회사설립요건의 완화,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주주(또는 사원) 특히 중소주주(소액지분권

1) 1999년 일부 수정은 중국의 기술산업이 발달함에 따른 하이테크기업(高新技術企業)이나 벤처기업(風險企業)을 회사법의 체제로 흡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2004년에는 주식회사 주권발행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던 규정(제131조, 제2단)을 삭제하는 조치이다.

3) 胡明遠, “公司法修改前臚”, 法律圖書館: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74 (2005.12.1)

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이익조정, 주식발행·양도의 제한 완화, 상장회사의 감독체계 제고, 회사 경영진의 의무와 법률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었다.⁴⁾

이어 제2차 심의에서는 주주의 회사재산청구권인정, 회사자산에 대하여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중개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인정, 유한회사의 이윤분배의무와 주주(또는 사원)의 이윤분배청구권인정, 회사와 개인재산이 혼합된 1인회사 사원(股份)의 회사채무 연대책임신설, 주식회사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의 완화, 회사법정대표자의 범위 확대, 회사의 채무자시 투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배제, 회사가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액의 한정, 주주의 권한남용이나 채무회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인정, 중소규모 회사의 감사회 설립면제, 상장회사의 집행이사(獨立董事)선택권 신설 등이 이루어 졌다.⁵⁾

최종적으로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투자의 결정 절차, 재무감독을 위한 회계사무소의 초빙과 해촉 절차, 국유자산감독기관의 출자자 권한대행, 주식모집서의 자금용도기재, 상장회사의 집행이사 설치의무부여, 주권 공개 발행시 재무회계보고서의 공고의무 등을 신설하였다.⁶⁾

이와 같은 중국회사법의 주요 개정방향은 종래 구 회사법이 국유기업의 관리규범이었던 것을 지양하고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회사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회사의 사회적 책임규정을 명문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의 충실의무·근면(勤勉)의무를 부과하여 자율과 책임이 상호 결합된 체제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 각 부분에서 논의한다.

본 내용은 최근 개정된 중국 회사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중국 회사법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구법과 신법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새로 개정된 조항을 구 회사법조항과 비교함으로써 그 개정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2. 중국 회사법의 적용범위 명시

4)中國法律信息網,“《公司法》草案有望6月通过”, <http://www.law-star.com/cac/1065.htm>(2005. 11.3)

5)中國法律信息網,“《公司法》修订草案将有12项重大修改”,<http://www.law-star.com/cac/5377.htm> (2005.11.3)

6)中國法律信息網,“《公司法》修订草案第三次审议稿又有六方面修改”,<http://www.law-star.com/cac/7083.htm>(2005. 11.3)

개정 회사법은 제1장 총칙과 제13장 부칙에서 본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 의할 때 개정 중국 회사법의 실질적 적용범위와 시적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법률은 국내에서 설립된 유한회사(有限責任公司) 및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에 대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제2조) 외국의 투자자(外商)가 중국에 투자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도 적용된다(제218조).⁷⁾ 둘째, 개정 회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은 개정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기업만 본 회사법의 적용을 받았지만(구 회사법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도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주식회사도 본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하였다(제218조 전단). 다만 외국인투자기업법이 본 회사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제218조 후단), 외국인투자기업법은 본 회사법의 특별법이 된다. 이러한 입법체제는 중국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의 이원적인 존재를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은 설립방식, 자본제도, 지배구조, 이윤분배 등에서 다른 체계를 갖게 된다.

종래 중국 증권법은 본 회사법이 공포된 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권거래와 관련 있는 많은 부분들이 본 회사법 제4장과 제5장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회사법과 증권법의 체계가 불일치하는 점 및 증권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법체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회사법과 함께 증권법도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법에서 규율하였던 증권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은 증권법으로 이관하여 입법하였다. 증권법과 본 법률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갖는다.

II. 회사설립요건의 완화와 구성원 책임 강화

1. 회사설립요건의 완화

본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7) 현재 중국 기업법률체계에서 유한책임유형을 갖는 기업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公司)·국유기업(특히 국가단독출자회사)·외국인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중 합자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과 유한회사로 등록된 합작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및 외자기업, 향촌집체기업중 법인자격이 있는 기업, 사영기업중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된 기업이다.

그 형태도 매우 한정되었기 때문에 회사법은 오히려 회사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회사설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에서는 출자형태를 5가지로 고정화한 것, 법정자본제에 따른 최저등록자본제의 유지 등이⁸⁾, 절차적 요건에서는 설립허가주의 등이 이러한 장애로 지적되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의 개선을 위주로 하였다.

첫째, 법정사원수를 현실화 하였다. 종래 구 회사법에서 유한회사의 법정 사원수는 2인 이상 50인 이하로, 주식회사는 5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서는 유한회사는 50인 이하의 사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하한선을 삭제하였고(제24조), 주식회사는 2인 이상 2백인 이하로 하였다. 유한회사의 경우 개정 회사법이 제2장 제3절(제58조에서 제64조)에서 1인유한회사를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2인 이상 50인 이하로 설립되었던 유한회사가 절대사원의 지분인수로 1인회사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이 개선되었다.

둘째, 법정 최저등록자본제를 개선하였다. 구 회사법에서 회사자본액은 회사 위험의 담보 및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격한 법정자본제의 틀 속에서 강행규정으로 하였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저등록자본액을 회사의 경영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 최고한도액(인민폐50만원)과 최소한도액(인민폐10만원)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⁹⁾ 그 납입액도 일회에 한하여 완납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민폐 1천만원으로 하였다(구 회사법 제78조 제2단). 이와 같은 고액의 등록자본액 설정과 일회완납의 강행은 그 본래의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는 제도가 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액을 인민폐 3만원으로(제26조 제2단), 주식회사는 인민폐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제81조). 이러한 완화조치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완화된 분기납부의 법정자본제를 도입하였다. 즉, 유한회사의 경우 전체사원의 최초 납입액은 회사 등록자본액의 20%보다 낮지 않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법정의 최저한도액 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제26조 제1단).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8) 趙旭東, 「新公司法講義」, 人民法院出版社, 2005, 122면

9) 구 회사법 제23조: 有限責任公司的 最低 登錄資本額은 ①생산경영을 위주로 하는 公司나 상품도매(商品批發)를 위주로 하는 公司는 인민폐(人民幣) 50만원, ②상품소매(商品零售)를 위주로 하는 公司는 인민폐 30만원, ③과학투자개발·자문 등에 관한 서비스業과 관련된 公司는 인민폐 10만원이다.

들이 납입한 가액의 총액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들의 출자액과 주식모집자금 액이 인민폐 5백만원 이면 된다. 다만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체 발기인의 최초 출자액은 법정 등록자본액의 10/100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들이 회사 성립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완납하도록 완화하였다(제81조).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회사의 총 주식에서 35/10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구 회사법과 동일하다.¹⁰⁾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사원이 출자할 때 일회에 완납하지 않아도 되며, 첫회 납입분은 총등록자본의 20%(유한회사) 또는 10%이상(주식회사)이면 유효하게 회사가 성립된다.

사원이나 발기인은 이와 같은 납입의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책임(제28조 제2단), 연채책임(제94조) 나아가 회사 불성립시의 발생된 채무와 비용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등을 지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시 그 출자형태와 출자방식을 완화하였다. 구 회사법에서는 출자형태를 현금(貨幣)·현물(實物)·工業產權·非專利技術(특허기술)·土地使用權 등 5종으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출자방식도 무형재산(공업산권과 비특허기술)의 출자비율을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구 회사법 제24조 제1단, 제2단). 이러한 구 회사법의 출자방식은 유형재산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경제적 효용을 높이려는 현대의 회사제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구 회사법에서 빠져있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한 비현금재산도 포함하였고, 무형재산의 출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였다(제27조, 제83조). 양도 가능한 비현금재산이란 강제집행가능성이 있는 객체로써 주권(股權)·채권(債權)·건물사용권(傍室使用權)·채권(債券)·투자기금권(投資基金券) 및 어음수표 등이 포함된다.¹¹⁾ 다만 노무출자나 광업권 및 지분권 등은 양도 가능한 것이지만 집행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다.

넷째, 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公司章程)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정관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구 회사법체제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제22조)은 모두 법정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처리되었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 가장 많은 분쟁을 발생시킨 사항이었다.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상의 정관기재사항¹²⁾은 거의 그대로 계승하면서,¹³⁾ 회사법

10) 구 회사법 제74조·제83조.

11) 劉俊海, “修改《公司法》完善公司制度”, [http://www.iolaw.org.cn/shownews.asp?id=5907\(2005.11.3\)](http://www.iolaw.org.cn/shownews.asp?id=5907(2005.11.3)), p.1

12) 구 회사법 제22조: ①公司의 명칭과 주소, ②公司公司경영범위, ③公司등록자본, ④股東(사원)의

전체구조에서 정관을 활용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별적 사항을 대폭 추가신설 하였다.

개정 회사법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는 사원총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8조 제11조), 이사회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7조 제11항), 1인회사 사원의 출자의무(제59조)와 유한책임(제61조), 사원총회 임시회소집요건에 관한 특별한 사항(제101조 제6항),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정관위반에 대한 표결참여이사의 손해배상의무(제113조) 등이며, 이 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다.¹⁴⁾ 이에 의하여 종래 사장(總經理)의 권한이 지나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하게 되었다.

다섯째,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였다. 특히 구 회사법체제에서 유한회사는 준칙주의로, 주식회사와 기타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허가주의에 의하여 처리되었다(구 회사법 제8조, 제27조 제3단, 제77조). 개정 회사법은 이를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통일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절차가 완화되었다(제7조).

2. 회사기관과 구성원의 법률책임강화

구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의 기관으로 사원총회(股東會), 이사회(董事會) 혹은 집행

성명 또는 명칭, ⑤股東(사원)의 권리와 의무, ⑥股東(사원)출자방식과 출자액, ⑦股東(사원)출자의 양도요건, ⑧公司의 기관과 그 구성방식 및 의사규칙, ⑨公司의 법정대표인, ⑩公司의 해산과 청산 방법, 사원(股東)이 별도로 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사항 등이다.

13) 다만 사원의 출자시간(제25조 제5항)을 추가하여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시간을 지키도록 하였고, 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을 사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으로 변경하였다.

14) 즉, 구체적으로는 사원총회소집에 관한 특별한 방식(제42조), 사원총회의 표결권행사에 관한 특별한 사항(제43조), 사원총회의 의사방식과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제44조), 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의 설치와 선임방식(제45조 제3단), 감사의 결원으로 인한 전임감사의 권한의 범위와 내용(제53조 제2단),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제56조 제2단), 국유독자회사 감사회의 직공대표자의 비율(제71조), 유한회사 지분양도와 이에 관한 정관수정에 관한 규정(제72조 제4단, 제74조), 회사 중요사항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반대한 사원의 우선매수청구권(제74조 제3항), 사원지위의 상속문제(제76조), 주식회사 주식모집설명서의 모집자금의 사용용도(제87조 제4항), 주식회사 양도·양수 및 대외담보제공에 관한 것으로써 사원총회를 거칠 사항(제105조),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및 고급관리자가 지주하는 본 회사 주식의 양도에 관한 제한사항(제142조 제2단), 고급관리자의 정관위반행위시 사원의 소송청구사항(제153조), 회사가 채무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사무소의 선정과 해촉에 관한 사항(제170조) 등이다.

이사(執行董事) 및 감사회(또는 감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¹⁵⁾ 이 외에도 이사회 혹은 집행이사의 하부기관으로 상업사용인(經理)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다.¹⁶⁾ 구 회사법은 회사의 안정유지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이사회 또는 사장이 형식화된 주주총회를 대신하여 실권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¹⁷⁾ 개정 회사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보호와 감사회의 권한을 증대함으로써 기관과 그 구성원의 권한 및 책임부분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첫째, 개정 회사법은 사원이나 주주들이 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총회의 권한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원총회(股東會)나 주주총회(股東大會)의 소집절차를 구체화 하였고, 이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소수사원이나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확대 및 보장하였다.

사원총회(股東會)나 주주총회(股東大會)의 권한사항은 구 회사법 제38조나 제100조에 따른 법정의 권한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유한회사의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구 회사법에서 표결권을 가진 1/4 이상의 사원이나 1/3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가 보유하도록 규정하였지만(제43조), 개정 회사법은 이중에서 1/10 이상의 표결권을 갖는 사원도 소집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 나아가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집행이사가 사원총회소집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10 이상의 표결권을 갖는 사원이 최종적인 사원총회 소집 및 주재권을 보유하도록 개정하였다(제40조 제3단).

주식회사의 경우 임시 주주총회(股東大會)의 소집사항은 구 회사법과 같지만,¹⁸⁾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을 합하여 10/100이상 되는 경우에도 임시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101조 제3항), 회사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01조 제6항).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주최하고 이사장이 주재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이사장, 이사 과반수 추천을 받은 이사, 감사회가 순서대로 주재하며, 이러한 주재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단독 또는 지분 주식합계가 10/100이상이 되는 주주가 독자적으로 주재할 수 있도록

15) 구 회사법 제37조, 제45조, 제51조, 제52조.

16) 구 회사법 제50조.

17) 江平, “修訂公司法從五個方面給企業帶來的影響”, 北大法律信息网: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31562\(2005.12.10\)](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31562(2005.12.10))

18) 구 회사법 제104조에서 정한 임시주주총회사유: 이사의 결원충족, 회사의 손실이 주식자본총액의 1/3이상인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때, 감사회가 요구는 하는 때.

법정화 하였다(제102조 제2단).

주주총회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할 수 없고(제103조 제3단), 결의시에 회사의 자기주식은 표결권이 없도록 하였다(제104조). 이와 같은 규정은 종래 이사장이나 사장(경리)이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주총회 결의시에는 누적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표결권을 집중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제106조).

둘째, 개정 회사법은 이사회의 장인 이사장(董事長) 1인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이사장을 둘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방식은 회사정관에서 정하거나(유한회사, 제45조 제3단),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한다(주식회사, 제106조, 제111조).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신설하였다.¹⁹⁾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에 관해서 구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에 관한 제48조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 및 1/3이상의 이사로 정하였고, 주식회사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 회사법은 이사회 소집권자를 1/10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주주, 1/3이상의 주주나 감사회가 임시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제111조).

특히 구 회사법에서는 이사장이 회사의 법정대표자임을 명시하였지만, 개정 회사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25조의 정관 기재사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사장이나 부이사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추천한 이사가 법정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제48조). 이 외에도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고급관리자(高級管理人員)’라는 개념정의와 법률책임을 새롭게 정하고 있다. 즉, 고급관리자는 회사의 사장(經理)·부사장(副經理)·재무책임자·상장회사의 이사회비서 및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관리자 이다(제217조). 이들은 일정한 법률책임을 진다.

셋째,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감사회 또는 감사에 관하여 그 권한과 책임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19) 신설된 규정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 직공대표자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전환한 것(제109조 제2단), 이사 연임규정(제109조 제3단), 부이사장 선임의 임의규정(제111조),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의 법정대표자 담임가능성(제111조 제2단), 임시이사회 소집청구권자의 확대(제111조 제2단), 회사 경영진에 대한 대출금지(116조) 및 고급관리자에 관한 보수 등의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할 의무(제117조) 등이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감사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법정인원수는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것²⁰⁾을 제외하고는 최소 3인으로 할 수 있다(제52조, 118조). 사원이 비교적 적거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한회사는 감사회 대신 1-2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제52조). 감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사원대표와 직공대표로 구성하도록 법정화한 것과 직공대표의 비율은 전체 법정인원수의 최소 1/3이 되도록 한 것은 변동이 없다. 구 회사법에서 감사회의 소집인을 1명 선임하도록 하였던 것에 반해, 개정 회사법은 동일 업무집행을 위해 1인의 주식(主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변경하였다. 감사회 주석은 감사 과반수이상의 선거로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회의 소집 및 주재권을 갖는다(제52조 제3단, 제118조 제2단). 감사회의 주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경우 과반수이상의 감사가 1명의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회 소집 및 주재권을 맡도록 하였고(제52조 제3단), 주식회사의 경우 부주석을 선임하였으면 부주석이 부주석이 없으면 유한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제118조 제3단).

감사회의 권한사항은 구법에서 정한 것과 비슷하다.²¹⁾ 구법에서 정한 감사의 권한사항 중에서 개정 회사법은 후임 감사를 선임할 때 까지 전임 감사의 권한유지(제53조 제2단), 이사나 고급관리자에 대한 파면건의권 등이 신설되었다(제54조 제2항, 제119조). 이사회를 대신한 사원총회의 소집과 집행권(제54조 제4항, 제119조), 사원총회의에 대한 의안제출권 등을 부여하였다(제54조 제5항, 제119조). 감사회사나 감사의 회사경영상황에 대한 직권감사권, 회계사사무소 초빙권, 이사나 고급관리자의 회사업무수행중 법률위반행위 적발시(제54조 제6항, 제119조, 제152조, 제150조) 소송대행청구권 등도 신설되었다(제152조). 이 외에도 감사는 구 회사법에서도 이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질문권이나 건의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해석으로만 인정되었던 것을 법률로써 인정하게 되었다(제55조, 제119조). 감사회사나 감사는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²²⁾

20) 구 회사법에서 국유독자회사의 감사회에 관한 법정인원수를 정하지 않았과 최소 3명이상으로 하였다(구 회사법 제67조). 개정 회사법은 이에 대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직공대표자의 비율을 그 구성원의 1/3이상으로 정하였다(제71조).

21) 구 회사법 제54조 (1)회사재무의 직무감사, (2)이사 및 지배인의 직무위반행위 감사권, (3)이사와 지배인의 직무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의 수정요구, (4)임시사원총회의 소집발의, (5)회사정관이 정한 기타 직무권한

22) 구 회사법 제59조·제61조·제62조.

3. 회사설립과 관련된 특별규정

최근 개정된 중국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수한 대상이었던 1인유한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였고, 국가단독출자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사설립과정이나 설립후에 다수자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소수주주나 소수사원에 관한 보호를 명시하였다.

첫째, 개정 회사법은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던 1인유한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였다. 1인유한회사는 1인의 자연인인 사원 또는 단독의 법인사원(法人股東) 만으로 구성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제58조 제2단). 1인유한회사의 설립여부에 대한 찬반논쟁은 그동안 투자자가 법인격을 이용하여 재산도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경제적인 입장에서 투자자보호와 회사경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1인유한회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었다.²³⁾ 개정 법률에서는 1인유한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되, 그 설립요건을 일반유한회사보다 가중하였고, 재투자를 금지하였으며,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회사형태를 법정화 하도록 하였고, 회사의 재무감사체계를 마련하였다.²⁴⁾ 1인 유한회사는 그 조직적 특성 때문에 엄격한 법정자본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둘째, 개정 중국회사법은 구 회사법에서 애매하게 규정하였던 국가단독출자회사(國有獨資公司)의 개념규정²⁵⁾과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을 다소 수정하였다. 국가단독출자회사(國有獨資公司)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이나 지방인민정부가 동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관리기관에 수권하여 출자자의 직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한 유한회사를 말한다(제65조 제2단). 따라서 국가단독출자회사의 모든 권한은 국유자산관리

23) 王保樹主編, 「中國公司法修改草案建議稿」,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359면.

24) 첫째, 1인유한회사는 등록자본이 인민폐10만원으로 일반 유한회사보다 높고, 회사정관이 규정한 납입액을 1회에 납입완료 하도록 하였다. 둘째, 1인유한회사는 1인의 자연인이 하나의 유한회사만을 설립할 수 있고, 이 회사는 새로운 1인유한회사를 투자설립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제59조 제2단), 유한회사의 재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셋째, 1인유한회사는 회사등기시에 개인독자회사인지 법인독자회사인지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0조). 1인유한책임은 회사정관에 투자자인 사원이 제정하고(제61조), 1인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재산을 사원자신의 재산과 분리 독립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제64조). 넷째, 1인유한회사는 사원총회(股東會)를 설치하지 않으며, 사원이 행사하는 직권에 관해서 규정할 경우에는 서면형식으로 사원이 서명한 후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제62조). 1인유한회사는 매회계년도 종료시에 재무회사보고서를 편제하여야 하고, 회계사무소의 심계를 받아야 한다(제63조).

25) 구 회사법 제64조: 본 법에서 말하는 국가단독출자회사는 국가로부터 투자를 위임받은 기관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국가가 수권한 부서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이다.

기관이 행사하게 되었다.

국가단독출자회사는 국가가 유일한 사원(股東)으로 출자한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총회(股東會)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국유자산관리기관이 국가의 수권에 의하여 사원권(股東權)을 행사한다(제67조). 특히 개정 회사법은 사원권의 일부를 이사회에 수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합병·분할·해산·증자·감자 및 회사채권의 발행 등과 같은 국유자산관리기관이 직접 결정할 사항 이외의 기타 중대사항에 관한 결정권도 부여하였다(제67조). 구 회사법은 국가단독출자회사의 이사회를 3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법정화 하였지만(제68조 제2단), 개정 회사법은 법정인원수를 두지 않고 일반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제65조). 이사회의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은 국유자산관리기관이 지정한다. 개정 회사법은 감사회의 법정인원수를 구 회사법이 규정하던 3인(구 회사법 제67조)에서 5인으로 상향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직공대표자의 비율을 최소 1/3이상으로 하였다(제71조). 감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직공대표자는 회사직공이 선거로 선출하고, 기타 인원은 국유자산관리기관이 파견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2단).

셋째,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서 구 회사법이 회사의 대외적 안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체계를 보완하여 주주보호에 관한 많은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수주주나 소수지분권을 갖는 사원의 권리를 강화시켰다는 점이 개정 회사법의 한 특색이 된다.

유한회사에서는 구 회사법이 개별 사원에게는 사원총회 회의록과 재무회계자료의 열람권만 부여하였으나, 개정 회사법은 회사정관, 사원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및 감사회 결의서 등을 열람 및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 이 외에도 회사의 증자·지분권 우선매입청구권 및 1/10이상의 표결권을 갖는 사원의 임시 사원총회소집청구권(제40조 제2단)과 이사회 소집과 주재권(제41조 제3단), 사원총회결의로 지분양도를 결정한 경우 회사에 대한 지분매수청구소송권(제75조) 등도 부여하였다.

주식회사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제101조), 특별한 경우의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재권(제102조 제2단), 주주총회 결정사항의 사전제안권(제103조 제2단), 자기주식의 표결권제한(제104조), 임시이사회 소집청구권(제111조 제2단), 회사합병·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에 이의를 제기한 주주의 자기주식매수청구권(제143조 제4항), 이사와 고급관리자의 직무위반행위에 관해 감사에 대한 소송청구 촉구권(제152조 제1단), 예외적인 소송권(제152조 제2단), 제3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에 감사에 대한 소송청구 촉구권, 이사와 고급관리자의 직무위반행위가 아닌 법률 기타

회사정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권(제153조), 회사의 회복 불가능한 경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회사해산청구권(제183조) 등이다.

4. 상장회사의 특별규정

구 회사법은 상장회사에 관해서 주식회사의 주식발행과 양도부분에서 규정을 두었고, 다시 증권법에서 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구 회사법에서 상장회사의 상장허가조건, 자본총액조건, 활동기간과 잉여이익조건, 주식의 분포조건 및 적법활동조건 등이 총괄적으로 규정되었다(제152조). 개정 회사법은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설립과 그 기관구성 부분에서만 규정을 두고 기타 모든 사항은 증권법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²⁶⁾

Ⅲ. 주식(지분)과 회사채권의 유통성 강화

1. 주식의 발행과 양도

회사의 주식(股份)발행 및 채권발행은 회사의 자본제도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도 관련 되므로 중국 회사법과 증권법은 많은 경제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개정 회사법은 주식의 발행과 양도에 관하여 비교적 절차를 간소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식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개정 회사법은 주식발행에 관해서는 주권발행원칙에 관한 일반적 규정 이외에 신주발행시에 구 회사법이 그 요건으로 하였던 기간, 잉여이익과 이익분배, 재무회계서류를 조작하지 않을 것, 일정한 기간동안 이윤율이 발생할 것(구 회사법 제137조)과 같은 제한적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신주발행요건을 완하였다. 이외에는 구 회사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²⁷⁾

26) 상장회사가 되려면 ①상장되는 주식은 국무원증권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 공개적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②회사자본총액은 인민폐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③공개발행되는 주식은 회사주식총액의 25/100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주금총액은 인민폐 4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이 수치는 공개발행되는 주식의 10/100 이상이어야 한다.④회사가 최근 3년 내에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어야 하고, 재무회계보고에서 허위기재가 없어야 한다(개정 증권법 제50조).

27) 따라서 주권의 종류, 주권발행가액 및 절차, 기명식 주권과 무기명식 주권 및 액면주권만 인정하는 것(제128조), 주권의 기재사항, 기명주권의 기재사항, 신주발행시 주주총회가 결정할 사항,

중국 회사법 및 증권법에서 주식은 발행되는 지역(국내, 국외)과 출자자의 주체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²⁸⁾ 특히 공공주는 유통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불가능한 주식의 발행은 중국 증권거래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둘째, 주식양도는 주주의 투자회수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회수의 완화와 함께 회사자본제도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에 관하여 구 회사법은 주로 제한적인 규정을 많이 두었다. 예컨대, 기명주권이든 무기명주권이든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였고(제146조), 발기인이 소지한 회사의 주식은 회사성립일로부터 3년간, 회사의 이사·감사 및 사장은 자신이 소지한 회사의 주식을 임기 내에 양도할 수 없었다(제147조). 또 구 회사법은 회사의 자기주식매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좁았다(제149조).

개정 회사법은 위와 같은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보완하였다. 무기명주권은 교부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제141조), 발기인이 소지한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1년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완화하였다(제142조). 회사의 이사나 감사 및 고급관리자가 소지한 회사의 주식은 임기내 연간 지주 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였다(제142조 제2단). 특히 본 회사의 주식을 지주하는 이사나 감사 및 고급관리자는 이직후 반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와 같은 제한적 규정을 회사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제142조 제2단).

개정 회사법은 이 외에도 주식을 회사직공들에게 장려의 의미로 분배하거나, 주주총회가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을 결의할 때 이의를 제기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보유주식을 매수청구할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제143조 제3항, 제4항).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후 주식소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구 회사법과 같다.²⁹⁾

등은 과거와 동일하다.

28)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발행주식은 A주식과 B주식으로 구분되는데, A주식은 중국내국인과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고, B주식은 상해증권거래소 및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외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다. 해외상장주식은 주식을 상장하는 해외증권거래소의 지역명칭을 따라 H주식(홍콩증권거래소 상장주식), N(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 T주식(동경증권거래소 상장주식), L주식(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S주식(싱가폴 상장주식)으로 분류된다. 출자자의 주체에 따라 국가주(國家股)·법인주(法人股)·개인주(個人股) 및 외상투자기업주(外商股)로 구분된다.

29)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감자(減資)의 경우나, 본 회사의 주식을

2. 회사채권의 발행과 양도

회사가 채권(債券)을 발행할 경우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범체계가 필요하다. 개정 회사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채권에 관한 구 회사법의 체계를 수용하면서(30) 채권의 발행과 모집절차 등은 증권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시행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 채권의 모집절차를 세분화 하였고, 양도조건을 완화 하였다.

구 회사법에서 회사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회사는 주식회사와 국유유한회사였다(제159조). 국유유한회사는 국가단독출자회사(國有獨資公司) 및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기타 두 개 이상의 국유투자기관이 설립한 유한회사이다. 유한회사는 본질적으로 폐쇄성을 지니므로 일반 투자자들이나 사회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채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 회사법에서 채권발행을 허용하였던 이유는 국유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이 국가에서 출자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상태가 양호하고, 경제규모나 경제력이 비교적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도 채권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³¹⁾ 개정 회사법은 채권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증권법에서 규정하도록 이관하였다. 개정 증권법은 구 회사법 제161조가 규정하였던 회사채권발행을 위한 법정조건을 명시하고 있다.³²⁾ 동 규정에서 회사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하였다(제16조 제1항).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먼저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은 국민경제를 조절하기 위하여 회사채권 발행규모를 총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회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서는 국무원에서 정한 신용평가제도를 통과하여야 한

지주하고 있는 기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매입을 인정하는 것은 구 회사법과 같다

30) 종래 구 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채권의 모집절차, 채권의 기재사항, 기명식 채권과 무기명식 채권의 발행과 채권명부의 작성, 채권등기제도의 마련, 주식전환사채의 발행 등은 개정 회사법에서도 그 체제가 같다.

31) 徐燕, 「公司法原理」, 法律出版社, 1997, 364면.

32) 개정 증권법 제16조: ①회사의 순자산액이 주식회사는 인민폐 3천만원 이상, 유한회사는 인민폐 6천만원 이상일 것, ②채권발행의 총 누계액수가 회사순자산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최근 3년간의 이윤분배가 평균적으로 회사채권의 1년 간 이자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 ④모집된 자금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투자되어야 한다. ⑤채권의 이자율은 국무원이 정하는 제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할 것 등이다.

다.³³⁾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약정으로 그 양도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제160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채권교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신설하였다(제161조 제2단). 다만 상장된 채권은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증권거래소의 상장거래나 기타 국무원의 비준을 얻은 장소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개정 증권법 제39조).

3. 유한회사 지분양도 신설

개정 회사법은 제3장을 신설하여 종래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에 관하여 규정을 둠으로써 폐쇄회사인 유한회사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게 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유한회사의 사원간에 지분의 양도가능성(제72조 제1단), 사원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양도시 기타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제72조 제2단), 지분우선매수청구권(제72조 제3단), 소송절차에서의 지분우선매수청구권의 보장(제73조), 회사 중요사항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에 반대한 사원의 회사에 대한 자기지분 매입청구권(제75조) 등을 신설하였다.

IV. 회사 자본제도의 개혁

구 회사법은 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하여 엄격한 법정자본제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회계제도와 기타 이윤분배 등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법정자본제의 완화를 위하여 분기납입방식을 부가하여 규정하였고, 구 회사법상의 법정준비금제도에 관해서 그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회사자본제의 객관적 유지를 위하여 회계사무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1. 재무·회계편제 의무와 회계사무소 심계제도 신설

회사의 재무·회계제도는 회사의 재무·회계제도의 규범화·표준화를 통하여 회사자

33) 이는 AAA, AA, A, BBB, BB, CCC, CC, C, D급으로 구분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를 BBB급이나 A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BB급 이하는 채권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발행자격이 없는 회사가 이미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인수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의 은행의 저축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관리관리조례 및 증권법 제17조 제5항.

금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시키며,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사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규범은 본 회사법(회사法) 이외에도 「기업재무통칙」³⁴⁾·「기업회계준칙」³⁵⁾·「등록회계사법(注册會計師法)」³⁶⁾·「회계법」³⁷⁾ 등의 법규가 있다.

구 회사법은 회사의 재무회계를 규범화·표준화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재무회계를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사항을 정형화 하도록 하였는데, 개정 회사법은 이에 부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첫째, 회사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하여 구 회사법은 회사의 재무회계보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와 함께 재무보고서류를 법정화하여 명시하였다(제175조). 재무회계보고서는 회사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자료임과 동시에 회사의 이해관계자나 국가 재무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를 회사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 회사법은 재무회계보고서류의 구체적인 요건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회사의 재무회계보고의무와 함께 회계사무소의 심계를 받을 것을 법정화 하여 재무회계보고서가 객관적인 지표가 되도록 수정하였다(제165조).

둘째, 작성되어 심계가 끝난 재무회계보고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주주나 사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³⁸⁾ 회사는 매 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업무집행기관은 그 연도예산집행결과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회사재무회계보고서(年度決算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년도회계기간과 분기회계연도 및 월회계연도 등이 있지만 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년도회계기간에 따라야 한다. 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는 구 회사법(제175조)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①대차대조표(資產負債表), ②손익계산서(損益表), ③재무변동표(財務狀況變動表), ④재무설명서(財務狀況說明書), ⑤이윤분배표(利潤表) 등이 포함될 것이다.³⁹⁾ 구 회사법체계에서 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는 주표(主表)와 부

34) 재정부공포(1992.11.30).

35) 재정부공포(1992.11.30).

36)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통과.

37)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통과.

38)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보고서를 각 주주에게 발송할 의무를,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년도 주주총회개최 20일전에 회사에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구 회사법규정과 동일하다(구 회사법 제176, 개정 회사법 제166조).

39)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이나 기간에서 회사의 자산·부채·주주권익을 나타내는 표로써 그 구성은

속표(附表)로 구분되었고, 주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변동표이고, 부속표는 이윤분배표였다.

재무회계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2중장부 작성금지, 회사재산의 개인명의 등록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은 구 회사법과 동일하다. 다만 개정 회사법은 투명한 재무·회계 처리를 위하여 회계사무소의 심계를 거쳐 재무회계제도를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이들을 위촉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정관에 그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도화하였다. 또한 위촉된 회계사무소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회계사무소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였다(제170조). 이와 함께 위촉된 회계사무소에 대하여 진실하고도 완전한 회계자료·회계장부·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회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은닉 또는 허위보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71조).

2. 준비금제도의 개혁

회사의 준비금(公積金)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를 제고시키며 영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과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기타 자본수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이익을 회사 내부에 유보시켜 특정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준비금제도는 회사, 주주나 채권자 등 회사

자산=부채+주주권익으로 된다. 이는 회사의 자본구조나 상환능력, 주주의 권익, 발전가능성 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한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회계보고서로서, 해당 기간 내에 회사의 모든 수입과 비용(원가포함) 및 이윤(혹은 손해)을 총체적으로 대비하여 이익과 손해를 측정함으로써 회사의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윤분배표는 회사의 이윤분배상태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으로써 해당 년도의 이윤분배상태와 연말 미분배된 잔여 이윤을 표시하고, 이는 실무상 손익계산서의 부속서로 취급한다. 손익계산서와 이윤분배표를 통하여 회사의 잉여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주주들의 이익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이용된다. 재무변동표는 회사의 회계기간동안 각종 자산·부채·주주권익의 변동상태에 근거하여 회사가 당기간에 사용한 자금의 재원조달과 운용 등에 관한 것을 담은 회계보고서이다. 재무변동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편제되며, 그 주요한 내용은 회사의 일정 회계기간동안 자금이 변동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방침을 알 수 있다. 재무설명서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변동표 등의 회계보고서 및 위의 보고서에서 예시하지 못한 자료나 회사 운영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부가한 것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각종 보고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설명서는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회계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상의 준비금 제도는 이러한 회사이해관계자 이외에도 회사직공들의 복지정책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중국 회사법체계에서 준비금제도는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정준비금(法定公積金)과 임의준비금(任意公積金)으로 구분되며, 자금의 출처에 따라 잉여준비금(剩餘公積金)과 자본준비금(資本公積金)으로 구분된다.

법정준비금으로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생산설비의 확장이나 자본증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 회사법과 동일하고, 다만 개정 회사법은 자본준비금은 회사 손해를 전보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69조). 법정준비금은 회사가 납세후 이윤을 분배한 후에 남는 총이윤의 10/100을 적립하는 것이고, 회사의 법정준비금 누계액이 회사등록자본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적립을 정지하도록 하였다(제167조 제1단). 특히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하였던 법정공익금(法定公益金)의 적립의무를 삭제하였다. 구 회사법에서 법정공익금은 회사의 이윤 중에서, 법정준비금적립이 끝난 후 잉여이윤이 있을 경우에 총이윤의 5-10%를 적립하는 것으로써 본 회사 직공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할 자금으로 적립되었다(제177조). 이 법정공익금 적립에 관한 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회사정관 또는 이사회에 결의로 적립을 방해할 수 없었고, 회사,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많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게 된 것이다.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정준비금은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되며, 이때 유보되는 법정준비금은 전환되기 전 회사등록자본총액의 25/100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법정준비금은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적립을 금지하거나 법정의 적립한도를 변경할 수 없다.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비영리활동에서 얻은 이익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윤 이외의 일정한 자본이나 자산 혹은 기타 수익에서 형성된 적립금이다. 자본준비금은 주식회사가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프리미엄소득이나 국가가 자본준비금항목으로 규정한 기타 수입항목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적립된다(제168조).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수입항목은 법정재산의 재평가가치, 회사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차액이나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등이 포함된다.⁴⁰⁾

법정의 잉여준비금은 법률이나 회사정관에 의하여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배당금(股利)을 분배하기 전에 세액공제 후의 이윤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적립하는 것이다.

40) 참고: 《企業會計準則》 제40조.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손해보전, 회사채무의 상환, 경영개선, 보험부보 등을 위하여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하는 준비금이며, 이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하지 않는다.

3. 이윤분배의 조정

회사의 이윤은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경영활동으로 얻은 수익이다. 《기업재무통칙》은 회사의 이윤을 영업이윤과 투자 순이윤 및 영업외 순수익으로 정하고 있다. 회사의 이윤분배와 관련된 규범은 본 법 이외에 각종 세법 등이 있다.

회사의 이윤분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첫째, 회사의 이윤 중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 각종 조세관련비용이나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둘째, 법정준비금으로 전년도 회사의 결손을 충당하고, 법정준비금으로도 전년도 결손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의준비금과 법정공익금으로 전보하기 전에 먼저 당해 년도의 이윤으로 그 결손을 충당하여야 한다(제167조 제2단). 셋째, 회사가 임의준비금을 인출하려면 법정공적금을 먼저 인출한 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넷째, 회사가 결손을 충당하고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에 이윤이 있을 경우에는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비례에 의하여 이윤을 배당하고, 주식회사는 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당한다(제167조 제4단).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상술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결손을 충당하기전이나 법정준비금을 적립하기 전에 이윤을 분배한 경우에는, 법정의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주주는 분배받은 이윤을 회사에 환급시켜야 한다(제167조 제5단).

V. 회사의 조직변경과 외국인회사 영업소

구 회사법에서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회사의 합병·분할·파산·해산 및 청산이 있었다. 개정 회사법은 이 외에도 증자나 감자조치가 있을 경우 회사 외부에 있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몇가지 규정을 추가하였다.

1. 회사의 합병·분할·증자 및 감자

회사합병과 분할은 회사의 조직을 변경하는 가장 주요한 사유가 된다. 중국 구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많은 제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첫째, 구 회사법은 회사합병 및 분할은 사원총회(股東會)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무원 수권부분이나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법정화 하였다(제39조, 제103조, 제182조, 제183조). 개정 회사법은 최근 중국 증권시장에서 회사의 합병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합병·분할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정부허가주의를 삭제하고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사법체계내로 수용하였다(제38조, 제100조).

둘째, 회사의 합병과 분할이 있는 경우 구 회사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합병이나 분할을 탈법적 수단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 또는 채무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였다.⁴¹⁾

개정 회사법은 종래의 공고의무와 통지의무를 인정하면서 다만 그 절차를 완화하였고, 선채무상환의무나 담보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회사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구 회사법에서 정하였던 공고의무도 신문지상에 공고(구 회사법은 3회 이상 공고) 하도록 단순화 하였으며,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구 회사법은 9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상환이나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제174조, 제176조).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분할후의 회사가 조직변경전 회사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 다만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분할이 있는 경우 두개 이상의 회사가 탄생하므로 분할후의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을 질 것을 신설하였다(제177조).

회사합병·분할은 모두 법에 의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와 공고를 하여야 유효하다.

셋째, 회사자산의 증가나 감소조치를 하는 경우 자산부채표와 재산명세서를 편제할 의무,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할 의무, 선채무상환의무 및 상당한 담보제공의무 및 자본감소후 등록자본을 법정최저한도액보다 낮지 않도록 보전할 의무 등은 구 회

41) 즉, 회사가 합병결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채권자에게 통지를 할 것, 또 결의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신문지상으로 최소한 세 번 공고를 하도록 하였다.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1차 공고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상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하였다(제184조, 제185조).

사법체제와 같고, 개정 회사법은 다만 그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회사 자산감소의 경우 취하여야 할 절차는 위 회사 합병·분할의 경우와 동일하다(제178조).

2. 회사해산과 청산

구 회사법은 회사가 종료되는 사유로써 파산·해산 및 청산을 둠으로써 경제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러나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종료사유로써 해산과 청산만을 규정하고, 이 사유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회사의 청산에 관해 상대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회사의 파산에 관해서는 새로 제정될 파산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유보하였다. 현재 「중국기업파산법(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2004년 6월 15일)를 통과하여 심의중에 있다. 파산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시행)규정」과 「민사소송법」 제9장의 기업법인파산절차에 관한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파산법의견」이 적용된다.

첫째, 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구 회사법에서는 회사법상의 해산사유와 기타 법률상의 해산사유로 구분하였다.⁴²⁾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에서 정한 사유이 외에도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경우와 및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도 해산사유로 규정하였다(제181조 제4항, 제5항). 또한 회사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 해산하는 경우 정관변경을 통하여 존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이러한 경우 그 결의요건을 전체 표결권 있는 지분의 2/3이상 또는 전체 2/3이상의 주주 동의를 얻을 것으로 함으로써 동시에 그 절차도 엄격히 제한하였다(제182조).

둘째, 회사의 해산절차가 종료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종료된다. 법인격의 종료시에는 반드시 청산을 하여야 하고, 청산기간 중에는 법인은 단지 청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민사행위능력을 보유하며, 청산을 통하여 업무와 채권·채무 등의 사항을 종결한다.

회사 해산사유 중에서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清算組)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제184조). 구 회사법은 청산인회의 구성원으로써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42) 구 회사법상의 해산사유로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영업기한의 만료,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의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한 해산, 회사합병·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제190조) 및 폐쇄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포함되었다(제192조).

사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자를 청산인회의 구성원으로 조직하도록 하였다(제191조). 개정 회사법에서는 청산조직의 구성기한 내에 청산인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청산인회를 조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구성원이 다양화 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청산인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구 회사법과 동일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사를 추가하였다(제184조). 청산인회의 권한사항은 구 회사법과 동일하다.⁴³⁾

셋째, 청산조직은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산조직은 성립일자로부터 10일 이내 채권자에게 통지할 것과 그 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 등에 관한 것은 구 회사법과 거의 유사하고 다만 기한을 약간 수정하였다(제186조).

3. 외국회사의 영업소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관해서 구 회사법이 규정했던 사항들이 개정 회사법에도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내에서의 설치(제192조), 법인격 없음(제196조), 철수할 경우의 의무(제198조)등은 모두 같다.

VI. 결론

중국의 개정 회사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정 회사법에서 회사는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국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성·발전 및 종료되는 법인격 있는 실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구 회사법의 한 특징이었던 회사의 국가관리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경제적인 회사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으로 개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회사설립과 해산의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한 것, 법정대표자 선출의 자율성확대, 행정부서가 아닌 국유자산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등과 같은 것이다.

둘째, 지배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 회사법상의 지배구조에서는 사원총회나 주주총회가 최고권력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흠결이나 추상적 규정으로 인하

43) ①회사재산의 정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편제, ②법에 의하여 채권자에의 통지 혹은 공고, ③회사업무의 조사, ④세금의 납부, ⑤채권과 채무의 정리, ⑥회사잉여재산의 처리, ⑦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에의 참가 등이다

여 이사회나 사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여, 경영진의 자격과 법률책임의 강화,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권한의 확대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더 나아가 주주 특히 소소주주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회사법이 채권자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단점을 보완하였다.

셋째, 회사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회사정관을 통하여 규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회사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정자본제의 완화, 유한회사의 지분양도 신설, 1인유한회사의 인정, 주식발행과 채권양도절차의 간소화, 회사자본제도의 개혁등과 같은 것이다.

넷째, 구 회사법체계에서 실체는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였던 회사내 당조직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당과 직공들의 활동근거를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개정 회사법의 전향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의 개정목적은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회사설립부분에서 회사자본제도가 여전히 법정자본제에 고정되어 있어서 회사가 대규모, 공개화 되어가는 경제적 현실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회사설립절차가 무효로 되고 난후의 실체적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둘째, 투자자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열람권이나 대표소송 등을 도입하였지만, 대주주이면서 실세인 이사장이나 사장이 유한책임의 법리를 남용하여 회사재산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많은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셋째, 자본과 지적재산을 주요한 자산으로 하는 현대 회사법체계에서 당조직의 활동근거를 명시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제정되어야 할 부수적 법령들이 많다. 이와 관련된 회사등기세법·파산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관한 하부 규칙들이 곧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정표

개정 회사법(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2005),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Abstract]

A Legal Review in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of China

Lee, Jeong-Pyo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of China("the Company Law 2005") presents several aspects as follows:

Firstly, the Company Law 2005 confirms that a company is not a part of State-owned propertie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but a legal entity with its own life cycle of incorporation, development and dissol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mpany Law 2005 strengthened the independency of the company and guaranteed mor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way in its management compared to the Company Law 1994. For example, it loosened the former license system to the report system for incorporation and dissolution, broadened the independency in appointing the legal representative, and changed the supervisory authority from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SAIC) to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of State Council(SASAC).

Secondly, several changes in the area of corporate governance are quite significant. Under the Company Law 1994, although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as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often abusively used the power over it owing to lackluster provisions. For this, the Company Law 2005 strengthened the requirement and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and broadened the legal right of the meetings of shareholders. Moreover, by adding the provisions to protect shareholders, especially minority shareholders, it remedied the provisions with priority given to the creditors.

Thirdly, the Company Law 2005 was revised to promote economic efficiency. To guarantee the independency of the company, it increased the subjects to be laid before the meeting of shareholders, and regulated to manage them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Besides, it also included the provisions on reducing the amount of registered capital and the procedure steps to issue the shares and assign the credits, assigning shar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LLC), permitting the establishment of one-person LLC, and innovating the financial system of the company.

Lastly, the Company Law 2005 regulated that the company should organize a committee of Communist Party of China(CPC). And by stipulating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Trade Union in detail. it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CPC and employees.

Although the Company Law 2005 has the above positive aspects, there are still many accompanying rules and regulations in need of enactment to achieve the aims of revision. Of those, especially rules and regulations on company registration, tax, bankruptcy and fair trade laws will be enacted soon.